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3월 27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27일

3.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중하위 소득층 주민이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시성 있는 직접 지원이 요구됨.
-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제9조)
 -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지원중단 조치 등

다. 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담당

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시장·군수 위임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강근)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7,220가구, 수급자수 63,284명, 차상위 계층은 10,618가구, 21,503명으로 추정됨. ('20.2.기준)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생계급여¹⁾, 교육급여²⁾, 의료급여³⁾ 등의 소득 기준이 상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등, 실제 생활곤란자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지원 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자로 제한⁴⁾하는 등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도 차원이 생활안정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중하위 소득층 주민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후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시성 있는 긴급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재난 등에 의한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1)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2)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3)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재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적극 홍보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고, 특히 제2항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자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소소한 재난상황이 아닌, 아래 수준의 재난 상황 발생 시로 한정하고 있음.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 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하위 계층 주민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와 유사한 수준의 재난발생 시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부족과 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현행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필요 시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및 바우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현행 법령에 따른 지원액이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의 인정 하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는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지원목적 달성 또는 지원금품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는 민·관 협치 차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해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통해,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는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법」 등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재원조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도 타당함.